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56

발의연월일: 2021. 9. 1.

발 의 자:김병욱·고용진·김예지

김종민 • 민병덕 • 박성준

서동용・송재호・양향자

이상헌 • 이성만 • 이원욱

정성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 시 접대비의 일정 초과분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법인세 과세특례 및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1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359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2354호)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접대비(이하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를 "대외활동비"로, "접대비 한도액"을 각각 "대외활동비 한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u>접</u>	<u>대</u>
<u>대비</u>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외활동비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	
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 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 1. ~ 8. (생략)
- ② ~ ⑤ (생 략)
- 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6조(<u>접대비</u>의 손금불산입 특 저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u>접</u> 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6
<u>대외활동비</u>
세136조(대외활동비의 손금불산
입 특례) ① <u>대</u>
외활동비

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 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 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 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으로 한다.

1. •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③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 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 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 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u>대외활동비</u>
,
1.•2. (현행과 같음)
②
<u>대외활동비</u>
1 0 (원레기 기수)
1. ~ 3. (현행과 같음) ③
3
대외활동비
대외
활동비 한도액
<u>ㄹㅇㄲ 친수ㄱ</u>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산출한다.

⑤ (생략)

<u>대외활동비 한도액</u>
4
<u>대외활동비</u>
대외활동비
⑤ (현행과 같음)